

그리스 환경법상의 기본원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현 준 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우리나라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 III. 그리스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 IV. 결론

I. 들어가며

환경법이란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의 총체’로 이해된다.¹⁾ 그런데 환경보호라는 목적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전통적인 공법원리만으로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전통적인 경찰행정법의 법리는 사인의 자유, 특히 기업활동 등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경찰작용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경찰법의 법리로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환경문제와 같은 영역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여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5쪽.

2 比較法學 (第21輯)

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공법원리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법만의 기본원리를 도출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이론적 형성이 시작된 환경법의 기본원리는 실정법상으로는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 및 기본권 존중주의와 환경보호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환경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문헌들은 1976년 독일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고서²⁾의 예에 따라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을 환경법의 3대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³⁾, 환경정의의 원칙⁴⁾, 존속보장의 원칙⁵⁾, 공동부담의 원칙⁶⁾ 등을 추가적으로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법의 기본원리들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직접 구속력을 갖는 법원칙으로써의 효력을 갖지 않는 한, 환경정책 및 법정정책적인 행위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되어 왔다. 물론 환경정책 및 법정정책적인 행위원칙으로서의 의미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상술한 환경법의 기본원리들이 점차로 헌법 내지 환경관련 개별법률들을 통하여 실정법상 근거를 확보해 나감에 따라 종래와 같이 이들 원리를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만 간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환경법의 기본원리라고 거론되는 원칙들 중 최소한 법률에 반영되어 법률로부터 충분히 도출이

2) Umweltbericht 1976 der Bundesregierung, BT-Drs. 7/5684, 8 ff.

3) 홍준형, 위의 책(주1), 72쪽 이하.

4) 홍준형, 위의 책(주1), 97쪽 이하.

5)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25쪽 이하; 류지태, 환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69쪽 이하; 홍준형, 위의 책(주1), 104쪽 이하 등.

6) 류지태, 위의 책(주5), 71쪽 이하;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257쪽; Michael Kloepfer, Umweltrecht(3. Aufl.), 2004, § 4, Rn. 52 ff.

가능한 원리들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칙으로써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⁷⁾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그리스에서 환경법상 기본원리로 소개되고 있는 원칙들 중에서 최소한 헌법 내지 환경관련 법률로부터 도출이 가능하여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법원칙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환경침해는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이를 위하여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영역에서는 법익의 침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법리보다는 법익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미리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위험방지의 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권리회복의 법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적 새롭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위험방지의 법리는, 상술한 이유 때문에 특히 환경영역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환경법영역에서는 이러한 위험방지의 법리가 사전배려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법원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전배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미래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통

7) 同志 김성수, 위의 책(주6), 253쪽.

4 比較法學 (第21輯)

하여 개인,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위주체들이 환경보호적으로 행동하고, 일정한 개발정책을 수립·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된다.⁸⁾ 사전배려의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 제1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기원하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는 국가나 사업자, 국민에게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거나, 국가로 하여금 일정한 환경기준 내지 환경계획을 설정·수립하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이나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개발행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평가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예컨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에게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던가, 동법 제4조가 환경오염 및 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환경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동법 제12조 이하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등이 사전배려의 원칙의 법적 근거가 됨과 동시에 이로부터 기원하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의 경우에도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것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

8) 홍준형, 위의 책(주1), 102쪽; 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법학(제22권), 2006, 81쪽.

리·보전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 원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는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기원하는 가장 중요한 실현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전배려의 원칙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개발사업의 시행단계 이전인 개발사업계획의 ‘수립·결정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배려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⁹⁾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별도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행정계획의 경우엔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시 전에, 개발사업의 경우엔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5조의3 제1항) 사전배려의 원칙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소간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실현에도 기여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9)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85쪽 이하; 박경철, 위의 글(주8), 85쪽 참조.

2. 원인자부담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란 환경오염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¹⁰⁾ 그런데 환경법상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이나 경찰법상의 부담 등 전통적인 법영역에서의 원인자책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경법영역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경제행정법영역에서 발전된 원인자책임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원인이자 직접 제거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법상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전통적인 법영역에서의 비용귀속을 판단하기 위한 원칙을 넘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유도적·예방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법상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단순히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귀속의 원칙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오염의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원인자의 실질적 책임귀속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당하다.¹¹⁾ 이처럼 원인자의 실질적 책임귀속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오염원인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오염을 제거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 원인자에게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의무와 이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치를 할 의무도 지게 되며, 오염원인자의 책임범위는 현실적인 위해 발생 혹은 부작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가치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환경오염은 그 특성상 오염원인자나 그 책임범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환경오염원인자의 범위와 그 책임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10) 류지태, 위의 책(주5), 69쪽 이하.

11) 同志 박경철, 위의 글(주8), 95쪽; 김성수, 위의 책(주6), 256쪽; 여인호, 원인자부담의 원칙, 경남법학(제17집), 2002, 173쪽 등 참조.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²⁾

그러나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환경을 오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당연히 사전배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의 배출부과금제도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서 기원하는 실현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가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염원인자의 실질적 책임귀속이라는 관점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협력의 원칙

협력의 원칙 내지 협동의 원칙은 환경보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달성하고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의 보호와 이를 위한 법규범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국가는 개인과 기업을 비롯한 공동체의 다른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협력을 얻어야 함을 의미

12) 윤서성,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제10권), 1989, 25쪽 이하 참조.

한다.¹³⁾ 따라서 협력의 원칙은 행정과정뿐만 아니라 입법과정 등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 원칙이 확고한 환경법상의 법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획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존재한다. 즉 협력의 원칙을 환경법상 법원칙으로 이해하기엔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의 법원칙이라기 보단 환경정책 및 법정정책적인 행위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존재한다.¹⁵⁾

이러한 견해와 같이 실제로 협력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규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이나,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 및 국민에게 동일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등에서 협력의 원칙을 유도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법안 등의 형성과정에 지역주민이나 환경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적극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은 협력의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정보공개 내지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및 참여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에서 협력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도출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1항이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

13) 김성수, 위의 책(주6), 255쪽.

14) 홍준형, 위의 책(주1), 109쪽.

15) 김병기, Rechtsnatur des Kooperationsprinzips im Umweltre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gelungen, 행정법연구(제19호), 2007, 141쪽 이하; 김성수, 위의 책(주6), 258쪽 이하 참조.

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던가, 동법 제15조의3 제1항이 “...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 협력의 원칙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됨과 동시에 이로부터 기원하는 실현도구가 된다. 다만 다른 일반행정영역과는 달리 환경행정영역에서는 협력의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써 더욱 강력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 공유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사업자 등의 환경정보인 경우도 많으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의 환경정보가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기존의 「정보공개법」과는 별도로 환경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¹⁶⁾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환경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1972년의 스톡홀름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과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된 이른바 리우선언(The

16) 박경철, 위의 글(주8), 89쪽; 홍준형, 위의 책(주1), 109쪽 등.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본격적으로 문헌에서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가 정의하고 있는 개념에 따르면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국내법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8년에 제정되기 이전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가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정도가 명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간접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도출될 수 있는 법규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 원칙이 국내 환경법에서 가지는 지위나 실천적 의미 등이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과¹⁷⁾ 일반적으로 환경법의 일반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문헌이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1976년 독일정부의 환경보고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환경법상 3대 일반원리로 들고 있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그간의 국내 문헌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환경법상 기본원리를 설명하면서 별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도 우리의 환경법상 기본원칙안에 편입되어야 함이 명확해졌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법률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

17) 同志 洪준형, 위의 책(주1), 73쪽 참조.

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4조와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이나, 제6조의 기본전략의 이행계획 수립, 제1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평가제도 등은 환경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존속보장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은 1976년 독일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고서의 예에 따른 환경법의 3대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의 다수 문헌이 환경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다. 존속보장의 원칙은 환경보호의 목표를 현상의 유지·보호에 두는 것으로서, 악화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환경상태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상태의 악화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적인 환경관리 및 자원배분을 통해 결국 추가적인 환경부담을 허용하게 되는 사전배려의 원칙보다 엄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반면에 다른 많은 견해들은 여전히 존속보장의 원칙을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세부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⁹⁾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와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존속보장의 원칙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 제시되며, 그 밖에 동법 제24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의 자연환경보전의무도 존속보장의 원칙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18) 류지태, 위의 책(주5), 69쪽.

19) Michael Kloepfer, a.a.O.(Fn. 6), § 4, Rn. 35 이하 참조.

Ⅲ. 그리스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그리스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법상 기본원칙으로써, 「그리스 헌법」 제24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사전배려 및 개선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2001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이지만, 2001년 헌법개정 전부터 그리스 고등행정법원은 재판5부의 판결을 통하여 이미 수차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헌법에서 유도가능한 환경법상 기본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었다.²¹⁾

그리스 환경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1972년의 스톡홀름선언과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이후부터 그리스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문헌과 판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²²⁾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그리스의 판례와 환경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몇 가지의 세부원칙으로 발전되었다. 먼저 판례가 “민감한 자연보호지역에서의 부드러운 개발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원칙은 지속가

20) 그리스 헌법 제24조 제1항 제2문 “The State is bound to adopt special preventive or repressive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21) Michail Dekleris, *Das Recht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2000, S. 23 ff. (Nikolaos Charitopoulos, *Die Grundprinzipien des deutschen, europäischen und griechischen Umweltrecht*, Dissertation, 2009, S. 304에서 재인용).

22) Nikolaos Charitopoulos, 위의 글(주21), S. 305.

능한 발전의 원칙의 세부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판례는 여기서 ‘민감한 자연보호지역’이란 보통 삼림, 산악, 해변, 소도(小島)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러한 민감한 자연보호지역에서는 주요부분의 어떠한 변경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²³⁾ 즉, 이러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요한 특성을 훼손하거나 그 보호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인위적인 활동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소도(小島)의 경우에는 개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요구가 그 섬의 생태학적 기능과 일치되는 경우에만 그 섬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장하는 범위안에서의 부드러운 개발²⁴⁾만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판례는 국토개발계획이나 건축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자연생태적 여건이 고려되어야만 하며, 특히 자연생태계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⁵⁾ 특히 해당 지역내에 있는 자연생태계의 연속가능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란 자연생태계의 생산가능성과 기능수행가능성의 유지, 발전 및 회복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는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보호의 개념에는 자연적·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다양한 야생동물종과 식물종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명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일컫어 ‘생물다양성보존의 원칙’이라 한다고 하여 또 다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²⁶⁾

그 밖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존속보호의 원칙’ 또는 ‘악화금지원칙’도

23)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판례로는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3557/1994판결; 3818/1995판결; 2993/1998판결; 1588/1999판결; 1790/1999판결; 3346/1999판결; 2940/2000판결 등.

24) 판례에 따라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25)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50/1993판결, 4207/1997판결, 2805/1997판결, 1027/1999판결; Michail Dekleris, *Das Recht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S. 365 ff 참조(Nikolaos Charitopoulos, 위의 글(주21), 2009, S. 306에서 재인용).

26)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1342/1992, 1174/1994, 1821/1995, 2304/1995, 1182/1996, 2731/1997; Michail Dekleris, 위의 책(주25), S. 433 ff. 참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세부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⁷⁾ ‘존속보호의 원칙’이란 환경오염의 지속적인 증가를 배제하고 최소한 현재의 환경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환경의 상태가 현재보다 더욱 나빠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존속보호원칙은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헌법상 명시적인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자연보호기본법」과 「수질환경보호법」 등 각 개별법에서도 근거한다.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0/60/EG」²⁸⁾이 그리스 국내법으로 전환입법된 「법률 3199/2003(수질환경보호법)」²⁹⁾은 하천은 인간의 생활기반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안에서 그 영속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가에 의무지우고 있다.³⁰⁾

또한 「법률 1650/1986(자연보호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규율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삼림은 국가에 의해서건 개인에 의해서건 그가 가지는 환경적 관점에서의 의미 때문에, 적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보장되도록 유지·보호·보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삼림의 보존뿐만 아니라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³¹⁾ 또한 「자연보호기본법」에 따른 자연보호지역 등 특정 지

27) *Evangelia Koutoupa-Regakou*, *Umweltschutzrecht*, 2007, S. 61(*Nikolaos Charitopoulos*, 위의 글(주21), 2009, S. 306에서 재인용)..

28) Richtlinie 2000/60/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Oktober 2000 zur Schaffung eines Ordnungsrahmens für Maßnahmen der Gemeinschaft im Bereich der Wasserpolitik, ABl. L 327, S. 1 ff.

29) 그리스에서는 법률의 제목을 0000/0000과 같은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뒤의 숫자는 법률이 제정된 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앞의 숫자는 당해 법률이 게재된 관보의 첫 페이지수를 의미한다.

30) 관련 판례로는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1668/2005판결 등.

역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발현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전배려의 원칙

그리스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환경법상 기본원칙이 사전배려의 원칙이다. 위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그리스 헌법」 제 24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사전배려 및 개선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전배려의 원칙은 그리스 환경법의 다양한 규정들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법률 3199/2003(수질환경보전법)」상의 하천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은 모든 하천관리행정의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해 하천의 환경적 특성의 보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배려원칙의 법률상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법상의 우선조치의무(예컨대 폐기물행정에 있어서 쓰레기감소조치 우선의무,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조치 우선의무)와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은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기원하는 환경정책상 행위형식으로써 그리스 폐기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법률 1650/1986(자연보호기본법)」과 「법률 3010/200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기원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행정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31) 법률 3208/2003(삼림환경보전법).

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 고등행정법원은 판례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계획의 자연생태학적 효과를 포함한 모든 직·간접적 환경효과를 사전에 대상별·분야별로 공익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에 최소한 계획에 대한 설명(장소, 종류, 범위 및 필요한 토지 등), 계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인간·동물·식물·토지·하천·대기·기후·경관·문화·그 밖의 물적 재화 등 보호대상에 계획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계획으로 인하여 이러한 보호대상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자연 또는 경관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나아가 계획시행자가 평가한 다른 대안의 개요도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³²⁾

3. 원인자부담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이것이 유럽 환경법의 법원칙으로 확고히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그리스 국내법에서도 환경법상 기본원칙으로 수용되었다. 그리스 법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법」과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0/53/EG」³³⁾이 그리스 국내법으로 전환입법된 「법령 116/2004(폐자동차령)」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령 116/2004(폐자동차령)」은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 수범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비자와 폐기물처리업자와도 관련이 있다. 「법령 116/2004(폐자동차령)」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최종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용의 부담없이 이를 생산업체

32)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1520/1993판결; 1352/1994판결; 2759/1994판결; 2537/1996판결; 3478/2000판결; 613/2002판결; 1495/2002판결; 2796/2002판결; 526/2003판결 등 참조.

33) Richtlinie 2000/53/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8. September 2000 über Altfahrzeuge, ABl. L 269, S. 34 ff.

나 수입업체에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자동차의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는 이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적법한 폐기물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자동차의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환경오염원의 생산자에게 그 사후처리를 부담지우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시키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책임과 무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1650/1986(자연보호기본법)」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환경침해를 야기시킨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학설은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며, 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이러한 손해가 제3자의 의도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³⁴⁾

그 밖에 「법률 1650/1986(자연보호기본법)」 제28조의 형사처벌규정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의 법적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이 법 제28조는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어떠한 환경침해를 야기시킨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를 요하는 시설을 허가없이 운영하거나, 발령된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환경을 침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판례에서의 환경법상 기본원칙

위에서 상기한 환경법상 기본원칙은 그리스 고등행정법원의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1993년의 판례에서 법원은 지속가

34) *Evangelia Koutoupa-Regakou*, 위의 책(주27), 2007, S. 281.

능한 발전의 원칙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대치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의 병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법적 원칙의 하나로 인정하면서,³⁵⁾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생태학적 측면은 환경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사전배려의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³⁷⁾

또한 고등행정법원은 1994년 Aheloos강의 지류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행정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³⁸⁾에서 헌법 제24조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환경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연생태계의 생활기반의 유지 내지는 적절한 수준의 천연자원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전배려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환경법상 법적 원칙임을 확인하면서, 경제발전은 반드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요구와 조화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1998년의 판례³⁹⁾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대하여 환경정책적 관점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환경정책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천연자원의 유지를 보장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는 그 이용비율이 재활용비율보다 커서는 안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는 물리적·기능적으로 동질인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다른 자원보다

35)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2844/1993판결.

36)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2755/1994판결.

37) Nikolaos Charitopoulos, 위의 글(주21), 2009, S. 313.

38)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2759/1994판결; 2760/1994판결.

39)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772/1998판결.

월등히 높은 생산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용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⁴⁰⁾ 즉 그리스 고등행정법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환경정책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하면서, 특히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천연자원의 이용제한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핵심적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고등행정법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서 유도되는 다양한 세부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삼림, 산악, 해변 그리고 소도(小島)의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한 자연보호지역에서의 부드러운 개발의 원칙’이 그리스 행정법원이 발전시킨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세부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림이나 산악은 특히 자연생태계의 항구적인 지속가능성, 동식물의 유지·발전·회복, 수자원의 관리, 대기정화 그리고 토양의 비옥성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그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부드러운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해변과 소도(小島)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태계, 그리고 그 희소성 때문에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뛰어난 경관도 영속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소도(小島)의 전통적인 특징(예컨대 특별한 건축문화유산)도 영속적으로 보호·관리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의 개발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부드러운 개발이어야만 하며, 이러한 지역에서의 파괴, 훼손 또는 주요특성의 변경 등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¹⁾

40)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2675/2003판결.

그 밖에도 고등행정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특히 국토개발계획이나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그 지역에서 자연공간적 여건에 대한 고려와 자연생태계의 생활기반의 보호, 관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자연생태계의 생활기반의 미래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계획수립에 대한 실제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환경에 장기간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방향으로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위반되는 건축기본계획 등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였다.⁴²⁾

또한 고등행정법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세부원칙으로 ‘생물다양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⁴³⁾ 생물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야생동식물과 그 생활기반이 인간으로 인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회복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서식지를 마련하여 주고 그들의 특별한 생활조건은 보장되어야 한다.

사전배려의 원칙도 다수의 고등행정법원의 판례에서 하나의 법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판례는 사전배려의 원칙은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행위원칙이라고 하면서,⁴⁴⁾ 또한 사전배려의 원칙은 환경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러한 위험의 충분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방지조치를 하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어느정도 수준의 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41)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3557/1994판결; 3818/1995판결; 2993/1998판결; 1588/1999판결; 1790/1999판결; 3346/1999판결; 2940/2000판결 등 참조.

42)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50/1993판결; 4207/1997판결; 2805/1997판결; 1027/1999판결 등 참조.

43)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1342/1992판결; 1174/1994판결; 1821/1995판결; 2304/1995판결; 1182/1996판결; 2731/1997판결 등.

44) 그리스 행정고등법원 613/2002판결; 2511/2002판결; 1672/2005판결 등

에 대하여 법원은 일례로 휴대폰기지국 설치허가의 위법성을 다룬 2005년의 판례에서 환경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허가는 환경법상 사전배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보장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단순히 위험가능성만이 존재하거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의 존재나 범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⁵⁾

IV. 결론

상술한 환경법의 기본원리들이 환경정책 또는 법정책적인 행위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건 아니면 직접 구속력을 갖는 법원칙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건 간에 현대의 복잡다단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때문에 환경법의 어떠한 원칙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 원칙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논의가 실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원칙들을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일은 좀 더 정확한 해답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헌과 법령에서 인정되고 있는 환경법의 기본원리들과 그리스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엔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 등이 문헌에서 환경법의 기본원리들로 소개되고 있다. 이중에 존속보장의 원칙은 견해에 따라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세부원칙으로 보고 이를 사전배려의 원칙에 포함

45)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1264/2005판결.

하여 이해하기도 하므로, 나머지 4개가 일반적으로 문헌이 인정하고 있는 환경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에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선언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으나, 협력의 원칙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만 이를 유도해볼 수 있는 법규정이 있을 뿐,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를 환경법상 법원칙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만이 이론의 여지없이 환경법상 법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의 경우에도 문헌과 국내법이 인정하고 있는 환경법상 법원칙으로 위의 세 가지 원칙을 들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환경법상 법원칙의 내용은 그리스와 우리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나 사전배려의 원칙 등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그리스의 경우엔 이 두 가지 원칙을 헌법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그리스의 경우엔 국내법에서 따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유럽환경법의 확고한 법적 원칙인 것으로 인정하여 각 개별법률에서 이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이러한 환경법의 기본원리를 그리스 헌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사전배려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기 전부터 이미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례를 통하여 이를 형성·발전시켜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 그리스 환경법, 환경법의 기본원리,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참고문헌

- 김병기, Rechtsnatur des Kooperationsprinzips im Umweltre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gelungen, 행정법연구(제19호), 2007.
-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 류지태, 환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법학(제22권), 2006.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 여인호, 원인자부담의 원칙, 경남법학(제17집), 2002.
- 윤서성,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제10권), 1989.
-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 Michael Kloepfer, Umweltrecht(3. Aufl.), 2004.
- Nikolaos Charitopoulos, Die Grundprinzipien des deutschen, europäischen und griechischen Umweltrechts, Dissertation, 2009.
- BMU (Hrsg.), Umweltbericht 1976 der Bundesregierung, 1976.

Zusammenfassung

Die Grundprinzipien des koreanischen und
griechischen Umweltrechts

Hyon, Junwon

Das griechische Umweltrecht ist von drei Grundprinzipien geprägt: dem Vorsorgeprinzip, dem Verursacherprinzip und dem Nachhaltigkeitsprinzip. Außerhalb der drei Prinzipien kennt das Umweltrecht auch als Grundprinzipien das Kooperationsprinzip und das Vorbeugeprinzip. Diese Prinzipien werden nicht nur in Griechenland, sondern auch weltweit als umweltrechtliche Grundprinzipien anerkannt.

Das koreanische Umweltrecht kennt auch diese Prinzipien. Nach der rechtlichen Background in Griechenland und in Korea sind aber die Einzelheiten ein wenig anders. Bedeutend ist deshalb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 den umweltrechtlichen Grundprinzipien zwischen Griechenland und Korea.

Im Allgemeinen gelten in Korea das Vorsorgeprinzip, das Verursacherprinzip, das Nachhaltigkeitsprinzip und das Kooperationsprinzip als umweltrechtliche Grundprinzipien. Der zweite Teil des Aufsatzes widmet sich deshalb dem Inhalt, der Rechtsnatur und den signifikanten Ausprägungen dieser Grundprinzipien, besonders unter dem koreanischen umweltrechtlichen Gesichtspunkt. Im dritten Teil kommt es auf den Grundprinzipien des griechischen Umweltrechts an. Als das einzige verfassungsrechtlich anerkannte Prinzip des griechischen Umweltrechts werden der Grundsatz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sowie dessen

Teilprinzipien analysiert. Als diese Teilprinzipien des Nachhaltigkeitsprinzips werden das Prinzip der milden Entwicklung der empfindlichen Naturschutzgebiete, das Biodiversitätsprinzip, das Bestandsschutzprinzip und das Prinzip des Verschlechterungsverbot es genannt. Andere Anerkennung der Grundprinzipien des griechischen Umweltrechts findet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griechischen Oberverwaltungsgerichts. Die Rechtsprechung des griechischen Oberverwaltungsgerichts ist einzubeziehen, soweit ihr Aussagen zu den einzelnen Prinzipien zu entnehmen sind. Das Vorbeuge- und Vorsorgeprinzip sowie das Verursacherprinzip kommen dabei in Betracht. Der dritten Teil erklärt deshalb die drei umweltrechtlichen Grundprinzipien in Griechenland.

Key Words : Grundprinzipien des Umweltrechts, Griechisches Umweltrecht, Nachhaltigkeitsprinzip, Vorsorgeprinzip, Verursacherprinzip

